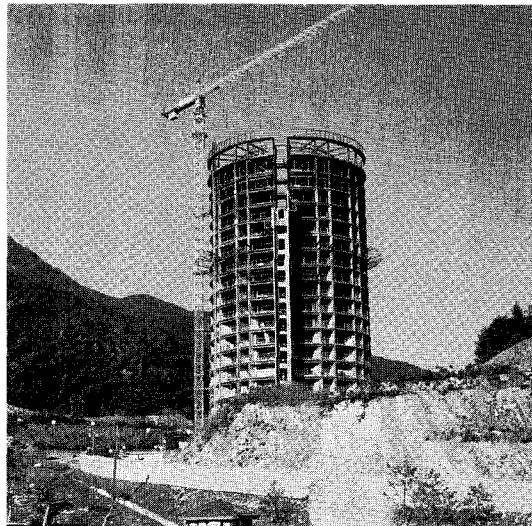


재정경제원은 97년1월1일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난 1월1일에 재정·공포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주제도를 개선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였다.

다음은 제정(안)중 설비업체 해당사항 주요부분과 우리 협회의 건의사항을 간추린 내용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안)중 설비업체 해당사항 주요부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예산회계법시행령)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제99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공사 및 용역 등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범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고시금액(55억원) 이상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고시금액 미만은 특수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시행	우리 협회 건의사항 수용 [건의내용] 55억 미만 공사전문 공사 포함) 제한적낙찰제 시행
1. 예정가격이 10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현 행(예산회계법시행령)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p>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미만인 공사. 다만,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다.</p> <p>2. 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p>	<p>재무상태 및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 및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순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p> <p>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p>	<p>일정수는 계약목적물의 종류, 입찰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담합이 방지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정함.</p> <p>(총입찰자수의 30~50%)</p>	

- \* ① 현행 10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적용하던 85% 적불대상자 낙찰제도를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없이 55억원 미만 공사는 특수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도입(우리협회 건의사항 반영)
- ② 특수제한적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③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일정수 : 계약목적물의 종류, 입찰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총입찰자수의 30~50% 수준에서 별도 고시함.
- ④ 최적격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현 행(계약사무처리규칙)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제7조(원가계산에 있어서의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에 있어서의 단위당 가격의 기준)	발주기관별 상이한 적용범위 책정에 따른 혼선 초래	우리 협회 건의사항 반영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을 얻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시기.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납품지 또는 공사현장 등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을 얻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동가격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	도서지역 등은 15%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시중노임을 적용	대한주택공사(15% 감액) 조달청(9.6% 감액) 등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으로 시중노임 단가에 감액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현 행(계약사무처리규칙)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가격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p>서 일정액을 가산할 수 있다.</p> <p>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노임단가</p> <p>2.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의 공사부문 노임단가</p>		<p>있는 실태를 개선</p> <p>정부노임단가 15% 인상효과</p>

\* 현행의 가감조항으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 등 발주처에서 시중노임단가에서 일률적으로 15% 감액 적용함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우리 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서 수차례 개정 건의한 사항을 반영

현 행(계약사무처리규칙)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p>제24조의2(부대입찰의 대상)</p> <p>③ 영 제91조의 2 제1항 .....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p> <p>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p> <p>2. 공항건설공사</p> <p>3. 댐축조공사</p> <p>4. 고속도로건설공사</p> <p>5. 간척 준설 또는 항만공사</p> <p>6. 철도 또는 지하철공사</p> <p>7.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p> <p>8. 발전소건설공사</p> <p>9.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p> <p>10.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p> <p>11. ~ 14. (신설)</p>	<p>제24조의2(부대입찰의 대상)</p> <p>③ 영 제1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p> <p>1. ~ 10. (좌동)</p> <p>11. 상하수도공사</p> <p>12. 관람집회시설공사</p> <p>13. 공용건설공사</p> <p>14. 송전공사</p>	<p>부대입찰대상 및 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14개 공종에서 55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확대</p>	<p>부대입찰공사의 확대에 따라 하도급계열화 확산</p>

현 행(예산회계법시행령)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제50조(계약보증금) ① 법 제79조 100분의	제121조(계약보증금)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현 행(예산회계법시행령)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10 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100분의 10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에 정량증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100분의 3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제조 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100분의 6 총공사,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3 상당금액 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신설)	④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없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서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상당금액 이상(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는 100분의 9 상당금액 이상) 2.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및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상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저기입찰의 경우 계약이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상향 조정	

현 행(예산회계법시행령)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당금액 이상(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는 100분의 15 상당금액 이상)		

현 행(계약사무처리규칙)	제 정 안	제·개정이유	비 고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9조 관련) (신설)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9조 관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원 도급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하도급자의 지위 강화

※ 현행 10~20%의 계약보증금을 연대보증인 없는 경우와 85% 미만 덤펑공사에 있어서는 30~50%로 강화

※ 현행 1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적용하던 내역입찰제를 개방대상공사인 55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

※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5% 이상으로 강화

※ 발주관서에 기본설계후 실시설계와 시공을 한데 둑어 발주함으로서 도로 등 민원발생 가능 대형공사의 효율적 공사 집행

## 경북도회 사무국 이전

**경북도회**(회장 정윤수)가 회원사에 대한 편익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5월1일 사무국을 이전했다.

이전된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전화번호 및 팩시번호는 종전과 같다.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7-5번지 장군식당  
2층

전화 : (0562) 81-6640  
팩시 : (0562) 81-1675

지난 4월호 88P에 게재된 傳統溫突의 時代의 變遷과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의 필자 중 金光禹 / 서울대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石鎬泰 /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건축학박사, 石鎬泰 / 서울대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의 誤記였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박사의 내용이 金光禹 /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건축학 박사, 石鎬泰 / 서울대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의 誤記였기에 이를 정정합니다.